



**꽃힐 특수교육 로컬 계획 지역 (SELPA)**

223 N.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6-5378 \* 팩스: (818) 246-3537

**학부모/후견인/대리인을 위한 절차상의 안전장치 통지**

**장애인 교육법 (IDEA)이 적용되는**

**아동과 학부모의 특수교육 권리, 파트 B**

**학부모/후견인/학생에게:**

본 통지서는 귀 자녀가 특수교육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거나 현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 통지서는 18세가 되어 이러한 권리에 대해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도 제공됩니다. 자녀가 특수교육에 의뢰되었고 자녀를 위한 일반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옵션들이 고려되었고 적절히 사용된 경우, 귀하는 특수교육 평가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특수교육은 출생으로부터 22번째 생일 사이의 장애 아동들에게 제공됩니다. 연방 및 주 법은 특수교육 배치와 서비스를 위한 평가 전체 과정에서 귀하와 자녀를 보호합니다. 장애 아동들의 부모는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 수립을 포함하여 개별교육 프로그램 절차에 참여하고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APE)과 공립 및 사립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능한 모든 대체 프로그램 가용성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본 통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곤 한 학사년 동안 1회에 한하여 귀하께 제공됩니다; (1) 최초 평가 의뢰 또는 평가에 대한 귀하의 요청; (2) 자녀에 대한 재평가, (3) 학사년 동안 처음으로 주정부에 불만제기서나 적법절차 청문회 접수 수령시; (4) 배치 변경으로 이어지는 학교 규칙 위반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5) 귀하의 요청시. 모국어 통지가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본 통지서를 모국어 또는 다른 소통 방식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들은 귀하의 모국어로 작성될 수 없는 경우, 구두로 통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 절차상의 안전장치는 귀하 교육구의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며 귀하의 요청이 있을 시 전자우편으로 귀하에게 우송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옵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귀하의 지역 교육구에서 알아 보십시오.

## 1

아래 용어 설명은 학부모 권리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이나 사용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거주지 교육구 특수교육부 디렉터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그의 전화번호는 본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특수교육**이란 학급, 가정, 병원 및 기관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실시되는 수업 및 체육교육을 포함하여 장애 아동의 독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특별히 고안된 수업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서비스**란 장애 상태에 대한 조기 판별 및 평가를 포함하여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요구되는 교통편의 및 발육상 포괄적이며 지원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관련 서비스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구어-언어 교정 및 청각적 서비스
2. 통역 서비스
3. 심리 서비스
4.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5. 오락 치료가 포함된 오락
6. 재활 카운슬링이 포함된 카운슬링 서비스
7. 방향 및 기동성 서비스
8. 학교 건강 서비스 및 학교 간호 서비스
9. 진단이나 평가 목적으로만 한정된 의료 서비스
10. 소셜 워크 서비스
11. 학부모 카운슬링 및 훈련

**장애 아동:** 장애인 교육법 (“IDEA”)에서 “장애 아동”이란 정신 박약, 농아가 포함되는 청각 장애, 구어 또는 언어 장애, 맹아가 포함되는 시각 장애, 정서 장애, 정형장애, 자폐증, 뇌 상해, 기타 건강 장애 또는 특수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동의:** 동의란 (1) 학부모의 동의를 필요한 어떠한 활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대화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2) 학부모는 그 활동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며 자신이 서명한 동의서 활동에 대한 설명과 활동 시작 그리고 실행을 위한 목록과 기록에 대한 공유가 포함되며 (3) 학부모는 자신의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동의에 대한 취소가 이미 실행된 조치를 무효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자녀의 장애 여부와 본질 그리고 자녀의 교육적 혜택을 위해 그가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유형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 56320 - 56339 조 및 미 연방법 타이틀 제 1414 (a), (b) 및 (c) 조에 의거한 다양한 테스트 및 측정을 사용하는 자녀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도구는 자녀를 위해 개별적으로 선정되며 지역 교육 기관이 고용한 유능한 전문인에 의해 실시됩니다. 테스트와 평가 자료 및 절차는 인종 또는 문화적 차별을 배제하도록 선정되고 실시됩니다.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또는 절차들은 자녀의 모국어나 대화방식으로 제공되고 실시됩니다.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결정에 있어서 단 하나의 절차만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2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APE”):** (1) 귀하에게 비용 부과없이 공공 감독 및 지시 아래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며 (2) 캘리포니아 교육부 표준에 부합되며 (3) 자녀에게 교육적 혜택을 주고 유아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도록 수립된 개별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자녀의 IEP 팀이 수립한 서류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재의 학업 성취 및 기능적 수행 (2) 측정 가능한 연 목표 (3) 동년배 아동과 비교하여 자녀가 실행 가능할 정도로 제공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보조적 도움 서비스에 대한 언급 (4) 자녀가 일반교육 프로그램의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한 설명 (5) IEP 시작일 및 예상 기간, 빈도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장소, 그리고 (6) 적절한 목표 설정기준, 평가 절차 및 매년 아동의 최소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

**가장 비제한적 환경 (“LRE”):** 적절한 경우, 장애 아동들은 비장애 아동들과 최대한 교육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특수학급, 분리 수업 또는 일반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장애의 본질과 심각성으로 인해 정규학급에서 제공되는 보조적 도움과 서비스로는 만족스러운 교육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됩니다.

**지역 교육기관 (“LEA”):** 이 용어는 교육구, 카운티 교육부 (“COE”), 특수교육 지방계획지역 (“SELPA”) 또는 SELPA 구성 멤버로 참여하는 차터스쿨이 포함됩니다.

**주요 권리에 대한 통보:** 자녀는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주 법 하에서 무능력자로 결정되지 않는 한, 그가 18세에 도달하였을 때 그는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 하에서 후견인이 없는 성인은 유능력자로 간주됩니다.

**학부모:** 학부모란 (1)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갖는 사람 (2) 지정된 보호인 또는 후견인이 없는 성인 학생 (3) 조부모, 양부모 또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그 외의 친척을 포함하여 친부모 또는 입양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4) 대리 부모 (5) 학생을 위한 교육적 의사 결정을 할 친부모의 권한이 법원 명령으로 구체적으로 제한된 경우, 입양 부모가 포함됩니다.

### **교육 기록은 언제, 어떻게 접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 및 후견인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하에 실시되는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에 의거하여 기록을 검토할 권리를 갖습니다.

교육 기록이란 자녀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개인 정보 수집, 유지 또는 이를 사용하는 교육구, 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갖고 있거나 그들로부터 취득한 기록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 및 주 법에서 교육 기록이란 주소, 개인 정보 이외에 학교 LEA에 의해 보관되거나 담당 직원이 필기, 인쇄,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또는 다른 수단으로 기록 보존이 요구되는 신원 확인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합니다. 교육 기록에는 교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의 사용 목적으로 작성되고 보관된 비공식 개인 메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한 아동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귀하는 자녀와 관련된 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 신상 정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아동의 이름, 학부모나 기타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2) 아동의 주소 (3) 아동의 사회보장번호, 학번 또는 법원기록 번호 같은 신원번호 (4) 개인적 특징 또는 합리적 확실성을 갖고 아동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타 정보 목록

추가적으로,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다음의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에 대한 신원 증명, 평가 및 교육 배치에 관한 모든 교육 기록과 아동에 대한 무상 공립교육 (FAPE) 규정 검토 (2)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위한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LEA로부터 답변을 받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FERPA 요건에 관계된 아동의 기록을 대리인이 검토 및 조사를 할 권리를 갖습니다. 후견인권, 별거

및 이혼과 같은 문제를 관장하는 적용 가능한 주법 하에 LEA가 학부모는 그렇게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조언하지 않는 한, LEA는 학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후견인을 두지 않은 18세 또는 고등학교 이후의 학생에게는 학생이 다니는 교육 기관에 양도됩니다.

각 학교의 기록 관리인은 교장입니다. 풋힐 셸파에 위치한 각 교육구의 기록 관리인은 본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록들은 학교나 교육구에 보관될 수도 있지만 각 장소에서의 서면 기록 요청은 학교에서의 기록 요청으로 간주됩니다. 기록 관리인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 기록 유형 및 장소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이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특수교육 기록은 폐기됩니다.

각 LEA는 정보 수집, 저장,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각 LEA에서 한 명의 사무관은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어야만 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IDEA와 FERPA의 주정부 방침 및 절차에 관해 훈련이나 지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각 LEA는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에 대한 현 리스트를 공공의 조사를 위해 유지해야만 합니다.

기록 관리인은 귀 자녀 기록에 대한 접근을 귀하 및 기록 검토를 위해 귀하가 허가한 최소 16세의 사람, 기록에 대해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를 갖는 교원, 자녀가 지명한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관, 그리고 연방, 주정부 및 지방 교육기관 직원으로 제한합니다. 귀하가 기록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 명령 또는 기타 적용되는 법에 의거하여 기록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 공개는 거부됩니다. LEA는 교육구 직원이 아닌 인물의 기록 접근 시간, 성명 및 목적을 기록한 일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는 장애인 교육법 (IDEA)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참여 기관 직원에게 공개되기 전에 다음의 정황을 제외하고 학부모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 과도기 서비스 제공 또는 지불받는 참여 기관 요원에게 신상 정보 공개, 및 (2) 학부모가 자녀를 거주지 교육구와 동일한 지역이 아닌 사립학교에 등교시키거나 등교시킬 예정인 경우, 사립학교가 위치한 교육구 직원과 거주지 교육구 직원들 사이에 아동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 기록 검토 및/또는 사본은 요청 후 5 수업일 이내에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기록을 찾고 꺼내는 비용이 아닌 사본에 대한 비용은 LEA 방침에 따라 부과되며 교육 기록 접근을 실제로 막지 않는 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일단 완전한 기록 사본이 제공되면 동일한 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사본 요청에 대해선 비용이 부과됩니다.

LEA는 각 아동들에 대한 다음의 영구 기록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아동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및 (2) 아동의 성적, 출석 기록, 이수과목, 수료 학년 및 수료 학사년.

LEA가 수집, 보관한 교육 기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 소지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믿는 경우, 서면으로 그 정보 정정을 LE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LEA가 귀하의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기록은 수정될 것이며 귀하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LEA가 30일 이내에 정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LEA는 문제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 또는 아동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 위반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가질 권리를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귀하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LEA는 합리적인 기일 안에 FERPA 청문회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되는 청문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문회가 있는 후 기록 수정 거부가 결정되는 경우, 귀하는 옳은 기록이라고 믿는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이의제기 기록으로 영구 첨부될 것입니다. 어느 당사자에 의해 문제가 된 기록 공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이의제기 진술서 역시 같이 첨부될 것입니다.

### ***IEP 모임을 녹음할 수 있는가?***

학부모, 후견인 또는 LEA는 IEP 팀 모임 과정을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IEP 팀은 최소 모임 24시간 이전에 IEP를 녹음하려는 의도를 통보해야만 됩니다. 모임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LEA에서 시작되었고 학부모가 녹음을 반대하거나 녹음 때문에 IEP 모임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모임을 녹음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는 언제라도 녹음 내용을 조사, 검토, 수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 ***독자적 교육 평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독자적 교육 평가 (“IEE”)란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교육기관 (LEA)에 의해 고용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및 LEA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자격 평가인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귀하가 LEA에 의해 실시된 최근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불만족을 LEA에 통보하였다면 귀하는 공공 비용으로 유자격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IEE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공공 비용으로 IEE를 요청하는 경우, LEA는 (1) 그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에 반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2) LEA가 청문회에서 귀하가 취득한 IEE가 LEA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공 비용으로 IEE가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LEA 평가가 적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할지라도 귀하는 여전히 IEE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됩니다.

5

공공의 비용이란 공공 기관이 평가 전체 비용을 지불하였거나 귀하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달리 평가 제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LEA는 이같은 IEE를 받을 수 있으며 IEE에 대한 귀하의 요청이 있으면 IEE에 대한 LEA의 기준을 제공해야만 된다. LEA가 실시하는 평가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각 경우, 귀하는 공공의 비용으로 1회의 IEE에 대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 비용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그 사본을 LEA에 제공한 경우, 평가 결과는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APE) 규정에 따라 자녀의 IEP 팀이 신중히 고려할 것입니다. 개인 비용으로 실시된 평가는 자녀의 적법절차 청문회에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LEA 평가 실시에서 자녀에 대한 관찰 또는 LEA 평가 절차가 학급 관찰을 허용하는 경우, IEE 실시인이 귀 자녀를 학급에서 관찰하거나 IEP 팀이 제공하는 교육 환경에서의 관찰하는 것이 또한 허용됩니다.

귀하가 자녀를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 배치를 제안하는 경우, LEA는 제안된 배치에 대해 관찰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학부모나 후견인이 일방적으로 사립학교에 이미 배치시켰다면 배치된 사립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이며 본인은 이것은 언제 받는가?***

귀 자녀에 대한 신원,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변경이 제안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또는 적절한 무료공립교육 구절에 대한 변경이 있는 어느 경우에도 LEA는 귀하에게 서면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LEA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이러한 제안 또는 거절에 대해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지는 LEA가 적법절차 청문회에 대한 학부모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역시 제공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명백하게 실행이 가능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귀하의 모국어나 다른 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나 다른 소통 방식이 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LEA는 이 통지는 구어 또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통역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통지를 귀하 지역 LEA에서 전자우편 소통이 가용한 경우, 이 옵션으로 받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LEA가 어떠한 조치를 제안하였거나 거절한 이유와 함께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려된 다른 조치들과 이 옵션들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설명.
- 평가 절차, 테스트, 기록 또는 LEA가 제안 또는 거절 근거로 삼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 IEP 팀이 고려하고 있는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 및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LEA의 제안이나 거부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명.
- 학부모는 자녀 주거지 교육구의 특수교육 디렉터, 셸파 디렉터 또는 세크라멘토 가주 교육부 (CDE)로부터 그들의 권리 및 절차상의 안전장치 사본을 받거나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

## 6

### *학부모 동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 요구되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A는 자녀에 대한 평가 및/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LEA는 아동에 대한 최초 평가나 재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고지에 입각한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귀하가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 승인을 거부하였다면, LEA는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 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특수교육 배치 및/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거나 동의를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논의할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특수교육 배치 및/서비스가 권고된 경우, 팀은 이때 배치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가 최초 IEP 배치 및/또는 서비스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같은 서비스 제안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LEA는 귀하의 승인 거부를 반복하기 위해 아래에 기술된 적법절차를 따르시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EA가 최초 배치 및 서비스를 제안하였고 귀하가 배치 및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LEA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APE) 제공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EA의 요청이 있는 후 이같은 동의가 없었다면, LEA는 IEP 팀 모임 소집이나 목표 수립 역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귀 자녀에 대한 모든 재평가 역시 귀하께 통보하여 동의를 또한 요구할 것이며 귀하가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의 일환으로 기존의 자료 검토 또는 모든 아동들에게 실시되는 다른 테스트나 평가는 실시하기 전에 학부모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또는 평가 이전에 모든 학생들의 부모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제외).

귀 자녀가 홈스쿨에 있거나 자비로 사립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귀하가 최초 평가나 재평가를 위해 동의 요청서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LEA는 귀하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LEA는 귀 자녀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으로 간주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서면으로 자녀 IEP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용할 수 있으며 이 부분들은 LEA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녀 IEP에서 동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이 아동을 위한 적절한 무상교육 제공으로 필요한 것으로 LEA가 판단하는 경우, LEA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시작하여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재평가한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LEA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귀하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다면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 ***나중에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처음 준비 단계 어느 때라도, 아동의 부모는 서면으로 교육구나 차터 스쿨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연장 구절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기 이전에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7

-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의 또는 판결을 얻기 위해 중재 절차나 적법절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아동에게 더 이상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교육 제공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IEP 팀 모임 소집 및 IEP 수립이 요구되지 않는다.

아동에게 최초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 뒤 학부모가 서면으로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구나 차터스쿨은 동의 취소로 인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삭제 언급을 위한 학생 교육 기록 수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학부모가 특수교육 서비스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서비스 전체가 아닌 일부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는 적법절차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본인은 이것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귀하 자녀 교육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귀하가 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자녀의 교사, 학교 행정관 또는 교육구 행정관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구나 SELPA 직원이 귀하 자녀의 교육, 귀하의 권리 및 절차상 안전장치에 대한 질문에 답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비공식적인 대화가 종종 문제를 풀고 열려있는 소통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나 교육구에서 귀하의 우려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다른 방식의 분쟁 해결을 이용하여 특수교육 분쟁 해결안을 추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풋힐 셸파 (SELPA)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귀하는 독립적인 제 3자 중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수에 관한 불만 제기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준수에 관한 불만 제기서는 장애인 교육법 (IDEA)이나 캘리포니아 특수교육법 하에 위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만 제기서는 (1) 서면으로 작성 (2) LEA가 장애인 교육법 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해당하는 법이나 규정 위반에 대한 진술 (3) 주장을 뒷바침하는 사실 포함 (4) 소송인의 서명 및 연락처 그리고 (5) 아동에 반한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a) 아동의 이름과 주소 (무주택 아동인 경우 가능한 연락인 정보) (b) 아동의 등교 학교명 (c) 문제의 본질 및 관련 사실들에 대한 설명 (d) 아는 한도 내에서 해결책 제시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교육구/LEA 차원에서 준수에 관한 불만 제기:** 풋힐 셸파는 LEA가 귀하의 우려점을 비공식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불만을 LEA에 직접 제기할 것을 귀하께 권고합니다. LEA는 어떠한 불만 제기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고 있으며 귀하의 불만을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귀하를 만나 우려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준수관은 교육구 및 직원 또는 계약인 그리고 학생에 대한 차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준수관은 또한 불만제기서 작성에서 귀하를 도우며 법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준수관은 불만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8

**주정부 단위의 준수 요청 제소장:**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LEA가 주법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준수에 관한 불만 제기를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준수에 관한 불만제기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Division  
Procedural Safeguards Referral Service  
1430 N Street, Suit 2401  
Sacramento, CA 95814  
전화 (800) 926-0648  
팩스 (916) 327-3704**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의 이 부서는 서면으로 소장 작성에서 귀하를 도울 수 있으며 법에서 요구되는 정보들 또한 제공할 것입니다. 준수 담당 직원은 적절한 경우, 불만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제출되는 준수에 관한 불만제기서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실들을 알거나 알게 된 날짜로부터 **일 (1) 년**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CDE에 불만제기서 접수와 동시에 LEA에 불만제기서 사본을 전달해야만 됩니다.

불만 제기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CDE는 (1) 필요시 독자적인 현장 조사 실시 (2)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귀하에게 불만 제기서에서의 주장을 보강할 추가 정보 제출 기회 제공 (3) 불만 해결 제안을 포함하여 불만 제기에 대한 응답 기회를 LEA에 제공 (5) 모든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며 LEA가 장애인 교육법 및/또는 관련된 주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 (6) 제소장의 각 주장을 다루고 이에 대한 발견점과 결론 그리고 최종 결정 사유가 포함된 판결문을 귀하와 LEA에 전달합니다.

### ***CDE에 제출한 "중재-만" 요청이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에서, 중재는 자발적입니다. 귀하는 행정 청문 부서에 "중재-만" 모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만"이란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없이 중재를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재는 비적대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귀하가 중재-만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와 교육구는 중재 일정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것이며 이 통지에는 중재 장소, 날짜 및 시간과 함께 이 케이스에 배정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불편부당한 중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될 것입니다.

중재 모임은 행정 청문 부서가 중재 요청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일정을 정해야만 됩니다. 변호사는 중재-만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나 교육구는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조언과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교육구에 의해 주어진 진술은 비밀이 유지되며 적법절차 또는 법정 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

"중재-만" 요청서는 다음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전화 (916) 263-0880  
팩스 (916) 263-0890**

###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본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적법절차 청문회란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공식 절차로 법정 소송과 유사한 것입니다. 청문회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판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 시작이나 변경에 대한 제안 또는 거부 그리고 자녀에 대한 FAPE 규정이나 자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가용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귀하나 LEA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는 다음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전화 (916) 263-0880**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는 청문회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들을 귀하가 알거나 알게 된 사유를 갖게 된 날짜로부터 *이 (2) 년* 안에 제출해야만 됩니다. 귀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전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시간 제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EA 가 (1) 귀하 요청의 원인이 해결되었다고 잘못 전달하였거나 (2) 본 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귀하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LEA 는 귀하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귀하 또는 LEA가 적법절차 불만제기서를 접수한 경우, 귀하에게 이 지역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또는 관련된 서비스가 가용한 정보를 알려주어야만 됩니다.

귀하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해야만 됩니다**: (1) 자녀의 이름 (2) 자녀의 주소 (또는 무주택 아동인 경우, 연락인 정보) (3) 자녀의 등교 학교명 (4)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포함하여 제안된 서비스 시작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 (5) 귀하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해결책. 귀하는 적법절차 요청서 사본을 LEA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 (또는 LEA)는 위에 기술된 정보 모두가 포함된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적법절차 청문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만제기서 받은 당사자가 불만제기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관과 다른 당사자에게 불만제기서가 상기에 열거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믿는 바를 통보하지 않는 한, 불만제기서는 상기 요건들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만제기서를 받은 당사자가 불만제기서가 불충분하다고 통지하면 OAH는 5일 이내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가 위에서 기술된 요건들을 충족하였는지 결정하며 불충분한 경우, 서면으로 귀하와 LEA에 통보할 것입니다. 요청서가 불충분하다고 OAH에서 결정하는 경우, 요청인은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킬 새로운 요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10

귀하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불만제기서를 받은지 10일 이내에 LEA는 귀하의 불만제기서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답변을 귀하에게 보내야만 됩니다. 적법절차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받은지 15일 이내에 LEA는 제기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귀하 및 적법절차 청문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들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의 IEP 팀 멤버,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 LEA 대리인과 함께 모임을 가져야만 됩니다. 귀하가 모임에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한 LEA 변호사도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 및 LEA 모두가 서면으로 문제 해결 또는 중재 절차 사용 포기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문제 해결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귀하가 모임 참석에 동의할 때까지 해결 절차 및

적법절차 청문회는 지연될 것입니다. LEA가 귀하의 불만제기 통비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문제 해결 모임을 개최하지 않거나 문제 해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아래에 기술된 적법절차 청문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청문관의 개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모임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그 합의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귀하 및 LEA 모두는 서류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서명 후, 귀하 및 LEA 모두는 합의안에 대한 무효를 신청할 3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LEA가 적법절차 요청서를 접수하고 30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간) 내에 귀하가 만족스럽게 불만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를 가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을 위한 적절한 일정이 계획될 것입니다. LEA가 문제 해결 모임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귀하의 참여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이를 문서화한 후 LEA는 30일 기간이 지난 후 청문관에게 귀하의 불만제기를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 및 LEA는 적법절차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또는 청문 과정 언제라도 분쟁 중재 참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함이 없이 OAH에 의해 공정한 중재관이 지명됩니다. 중재관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OAH 시간을 연장하지만; 청문회 또는 귀하의 다른 권리들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 요청 사유가 된 문제들이 해결 모임 또는 중재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 OAH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케이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30일의 해결 기간 종료 이전에 내리고 45일 안에 당사자들에게 결정 사본을 우송하여야 합니다. 청문회는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결정을 위한 45일의 타임라인은 다음의 사건들 중 하나가 발생한 이후의 날짜로부터 시작됩니다: (1) 양 당사자들이 해결 모임을 포기하도록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2) 중재 또는 해결 모임 중 어느 것이 시작되었으나 30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다고 동의하였다; 또는 (3) 양 당사자들이 30일의 해결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중재를 계속하기로 동의하였지만 나중에 학부모나 LEA가 중재 절차를 취소하였다.

청문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양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를 요청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절차 제기서에서 다루어지 않는 이슈들을 청문회에서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특수교육과 행정청문회를 관장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청문회를 가질 권리; (2) 변호사 또는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대변될 권리; (3) 증거, 서면 및 구두 논거를 제출할 권리; (4) 대질, 반대 심문 및 증인 출두를 요청할 권리; (5) 청문회에

대한 서면 기록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녹취록을 받을 권리; (6) 문제 해결 기간 종료 후 45일

11

이내에 판정 및 결정을 서면이나 선택에 따라 녹취록을 받을 권리; (7) 청문회에 앞서 최소 10일 이전에 상대방이 변호인에 의해 대변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 (8) 청문회에 앞서 최소 10일 이전에 상대방의 주장 및 제시된 해결안을 통보받을 권리; (9) 청문회에 앞서 최소 5일 이전에 당시까지 완료된 평가 및 권고안, 증인 명단 및 증언의 일반적 부분이 포함되는 모든 서류 사본을 받을 권리; (10) 청문회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한 권리; (11)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1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회 일정 연장을 요청할 권리.

청문회에 포함된 학부모들에게 다음의 권리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1) 청문회에 자녀를 출석시킬 권리 (2) 공개 청문회를 가질 권리; 및 (3) 무료로 청문회 및 사실 인정과 결정 기록을 제공받을 권리.

### ***적법절차 불만제기서에 IDEA의 절차 위반이 제기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귀 자녀가 적절한 무료 공립교육 (FAPE)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청문관 결정은 FAPE와 관련되어 직접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근거해야만 됩니다.

절차 위반 (예: “불완전한 IEP 팀”)을 주장하는 문제에서, 청문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위반만으로는 귀 자녀가 FAPE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1. FAPE에 대한 귀 자녀의 권리가 훼손되었다;
  2. 귀 자녀에 대한 FAPE 구절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귀하의 참여 기회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 또는**
3. 귀 자녀의 교육 혜택이 박탈되는 원인이 되었다.

상기에 기술된 구절들은 청문관이 절차상 요건들에 대한 IDEA 준수를 교육구에 명령하거나 귀하가 이미 접수한 적법절차 불만제기서와는 별개의 또다른 적법절차 불만제기서 접수를 배제하도록 막지 못합니다.

### ***적법절차 청문회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청문회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양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적절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기록 및 필사본은 민사 법원에 제출되어질 것입니다. 법정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를

청취할 수 있으며 우세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항소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적법절차 청문회 계류 동안 본인의 아이는 어디에 배치되는가?**

적법절차 요청이 일단 LEA에 접수되면, 문제 해결 기간 및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아동은 학부모와 LEA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육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귀하의 적법절차 요청이 최초 공립학교 등록 신청과 관계되는 경우, 귀하의 동의와 함께 자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됩니다.

12

귀하의 적법절차 요청이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IFSP")에 의거해 서비스를 받았던 아동을 위한 최초 신청이고 아동이 3세가 되었다면, LEA는 자녀가 받았던 IFSP로부터 받았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LEA로부터 특수교육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귀하가 최초 특수교육 서비스에 동의하였으며 적법절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LEA는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귀하와 LEA가 동의하는 분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대체적 임시 교육환경 ("IAES")에 배치되었다면, 자녀는 적법절차 청문회 계류 동안 최대 45일 동안 또는 IAES 기간 종료 날짜 중 먼저 발생하는 날까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 **본인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어느 경우 상환되는가?**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학부모가 이기는 경우, 법정은 재량으로 장애아 부모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LEA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찮고 부당하거나 근거없는 소인으로 소장을 제출한 학부모나 변호사 또는 소송이 명백히 하찮고 부당하거나 근거 없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학부모나 변호사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LEA에게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소장 또는 후속 소인이 괴롭힘을 위해, 불필요한 지연을 위해, 또는 쓸데없이 소송 비용을 늘이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출된 경우, LEA는 학부모 또는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 비용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가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 (2) 비용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간당 비용을 초과한 경우 (3) 소요 시간 및 법적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또는 (4) 학부모 변호사가 LEA에 적절한 적법절차 요청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법정이 LEA가 소송이나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불합리하게 지연하였거나 절차상의 안전장치를 IDEA가 위반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비용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LEA가 제안한 합의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거절 또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나 법정 공방이 있을 후 10일이 지난 어느 시기에 청문관 또는 법정이 학부모가 받을 최종 보상금이 합의서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적다고 판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변호사 수임료나 비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승소하고 법정이 귀하의 합의안 거절이 상당히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IEP 모임이 행정 절차 또는 법적 조치의 결과로 소집된 것이 아닌 경우,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에 대해선 수임료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모임은 행정 청문회 또는 법정 공방으로 소집된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변호사 수임 규정상 행정 청문회나 법정 공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LEA가 본인 아이에게 훈육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본인 아이의 권리는 무엇인가?***

학교 교직원들은 장애가 있는 아동의 배치 변경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케이스 별로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생 품행 규칙을 위반한 장애 아동을 최대 연속 10 수업일 동안 자신의 배치로부터 대체적 임시 교육 환경 (IAES), 기타 환경 또는 정학에 처할 수 있으며 (비장애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대체적 환경 범위까지) 그리고 별도의 비행 사건에 대해 한 학사년 동안 이 배제가 배치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10 연속 수업일 이하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13

다음과 같은 경우, "배치 변경"이 발생합니다: 이 배제는 10 연속 수업일 이상이거나 아동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배제 패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 일련의 배제는 한 학사년 동안 총 10일 이상이다; (2) 아동의 행동은 일련의 배제로 이어진 이전 사건들에서의 아동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및 (3) 아동이 배제된 각각의 배제 시간 및 총 배제 시간 그리고 이 배제들이 서로 어느 정도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지와 같은 추가적인 요소. LEA는 배제 패턴이 배치 변경인지 여부를 케이스 별로 결정합니다.

장애 아동이 학생 품행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자신의 배치에서 배제된 기간이 10 수업일이 초과하거나 누적된 정학이 10일이 초과되었으며 이러한 정학이 배치 변경을 가져올 경우, LEA는

훈육조치가 요구되는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여부 결정을 위해 IEP 모임을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모임은 아동의 배치 변경 결정 10일 이내에 개최될 것입니다. IEP 팀은 문제 행동이 다음과의 연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1) 자녀의 장애가 문제 행동의 원인이었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는 (2) 아동의 IEP 실시에서 LEA의 실행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여부.

LEA, 학부모 및 IEP 팀 관련 멤버들이 그 행동은 아동의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IEP 팀은 다음의 것 중 하나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1) 아동의 행동이 배치 변경 및 행동 중재 계획안 실시로 이어진 기능 행동 평가가 이전에 실시되지 않았다면 기능 행동 평가를 실시한다; 또는 (2) 기존의 행동 중재 계획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한다. 상기의 옵션 중 하나에 추가하여, IEP 팀은 학부모와 LEA가 행동 중재 계획안 개정에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아동이 배제되었던 배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팀이 그 행동은 아동의 장애가 나타난 것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교직원들은 비장애 아동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절차의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기간의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비록 다른 환경일지라도 그가 일반교육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IEP 목표 달성을 향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아동의 IEP 팀은 적절한 서비스와 이 서비스들을 위한 환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적절한 경우, 아동은 또한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중재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며 위반 행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고안된 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학부모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정학 또는 퇴학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 또는 아동의 행위는 자신의 장애가 나타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적법절차 제기서를 접수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훈육 조치적 배치 또는 현행 결정 모임 결과와 관련하여 학부모 또는 LEA 누구라도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주정부는 청문회 요청 날짜로부터 20 수업일 이내에 실시될 청문회를 신속히 정해야 하며 청문회가 있는지 10 수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항소 기간 동안, 자녀는 현 배치에 머물 자격이 있지만 자녀가 45 수업일 동안 IAES에 배치되어 있다면, 청문관의 결정 계류 동안 또는 정학 종료 중 먼저 발생하는 날까지 아동의 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훈육조치가 계류중일 때, 아동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면 그 평가는 신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아동은 학교 당국이 결정하는 교육 배치에 있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훈육조치의 원인인 그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LEA가 이 아동은 장애가 있는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면, 장애인 교육법 하에 마련된 보호 조항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것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학부모가 서면으로 자녀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구 감독관, 행정 요원 또는 아동의 교사에게 표명하였다. (2) 학부모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또는 (3) 교원이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감을 LEA 특수교육 디렉터 또는 기타 감독 요원에게 표명하였다. 학부모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허가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하였거나, 아동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었지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LEA는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LEA가 장애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면 아동은 장애인 교육법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귀 자녀가 저지른 범죄를 학교 사무관이 적절한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특수교육법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하는 LEA는 아동의 특수교육과 훈육조치 기록 사본을 적절한 당국자들이 고려하도록 전달하도록 확실히 해야만 되지만 FERPA에서 허용된 범위에 대해서만 전달해야만 된다.

### ***본인의 아이가 잠정적 대체 교육환경에 배치되는 경우, 그 절차는 무엇인가?***

아동의 행동이 자신의 장애가 나타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한 상황 하에서 학교 직원은 아동이 학교, 교내 또는 주정부 및 LEA 관할권 안에 있는 학교에서 다음의 위법사항 중 하나를 저질렀을 때 45 수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생을 IAES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1) 무기를 소유하였거나 소지하였다 (2) 불법적인 마약류임을 알면서 소지, 사용하였거나 통제 물질 매매 또는 매매를 요구하였다 (3)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혔다. 아동을 45 수업일 동안 IAES 배치를 결정 한 후 LEA가 아직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LEA는 기능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중재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경우). 이같은 중재안이 이미 실시중인 경우, IEP 팀은 이 조정을 숙고하여야 합니다. IEP 팀은 아동이 IAES로서 일반 교과 과정에 참여하며, IEP에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고, 위법 행동을 다룰 수 있는 조정을 제공하며, IEP에 기술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방법 하에서, 청문관은 장애 아동을 원래 있었던 배치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관은

이같은 아동의 현 배치 유지가 아동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45 수업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적절한 IAES 배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주립 특수학교란 무엇인가?**

주립 특수학교는 농아, 청력 어려움, 맹아, 시각 장애 또는 농-맹아 학생들에게 다음의 3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remont 및 Riverside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농아학교 그리고 Fremont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맹아학교. 이들 주립 학교는 유아로부터 21세까지의 농아 학생에게 그리고 5세부터 21세까지의 맹아 학생 모두에게 캘리포니아 학교 거주 및 주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립 특수학교는 평가 서비스 및 테크닉 역시 제공합니다.

15

주립 특수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주 교육구 웹사이트 <http://www.cde.gov/sp/ss/>를 방문하거나 자녀의 IEP 팀 멤버나 셸파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 **본인의 아이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본인의 결정과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가?**

IDEA는 LEA가 귀 자녀에게 FAPE이 가용하도록 제공하였고 귀하가 자녀를 사립학교나 시설 등록을 선택하였다면 귀하의 장애 아동의 사립학교나 시설에서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교육 비용을 지불하도록 LEA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립학교가 위치한 교육구는 34 CFR 섹션 330.131부터 300.144 하에 자신의 부모에 의해 사립학교에 배치된 아동들에 관해 IDEA구절 하에 다루어져야 할 아동의 필요 그룹에 귀 자녀를 포함시켜야만 됩니다.

자녀의 사립학교 등록 이전에 LEA가 FAPE을 시기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학교 배치가 적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청문관 또는 법정은 사립학교나 기관에 자녀를 배치한 비용 상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최근의 IEP에서 제안된 배치를 거부한 것이며 자녀를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공립학교 퇴교 최소 10 수업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상환금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공립학교 퇴교 이전에 LEA가 자녀에 대한 평가 의도를 통보하였고 학부모가 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녀를 평가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상환금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LEA가 학부모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통지 제공 요건에 관한 통지를 학부모가 받지 못하였다; 또는 통지 요건 준수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상환금은 삭감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영어를 읽고 쓸수 없거나 또는 또는 통지 준수 요건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것 같은 경우, 법원이나 청문관 재량에 따라

상환금은 삭감될 수도 있고 삭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은 귀하의 소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정하는 경우, 상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정황 속에서 아동을 위해 대리 부모가 지정되는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는 LEA 결정이 있는 후 30일 이내에, LEA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을 위해 대리 부모를 지정할 것입니다:

1. 아동은 법원의 부양인 또는 피보호인이며, 법정은 아동을 위한 교육 결정에서 부모나 보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아동은 그를 대변할 책임있는 부모나 보호인을 갖고 있지 않다. 또는
2. 아동은 법원의 피보호인 또는 부양인이 아니며 **그리고** 학부모나 보호인이 행방불명 상태이고 **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동반자가 없는 무주택 청소년이다.

아동을 위한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할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 LEA는 친척으로서 돌보는 사람, 양육 부모, 또는 법원이 지정한 특별 후원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을 고려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할 것입니다.

대리 부모는 아동을 적절히 대변할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리 부모는 아동과 최소 1 회 만나야 할 것이고 가용한 경우,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 아동과 같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 16

대리 부모는 장애 판정, 평가, 교육 계획 및 목표 수립, 교육 배치, IEP 검토 및 수정 그리고 비용급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치료, 작업 및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IEP 동의서 제공을 포함하여 아동의 FAPE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서 아동을 대변합니다.

아동을 대변하는 데 있어 이해상충이 있는 사람은 대리 부모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대리 부모가 아동의 교육이나 돌보는 일과 관련된 LEA 직원 또는 대리 부모 주 수입원이 아동이나 다른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입양 양육인인 경우, 이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양 양육인, 퇴직 교사, 사회 복지사 그리고 보호 관찰관 등은 모두 대리 부모로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무주택 청년인 경우, 응급 및 임시 대피소, 독립생활 프로그램, 가두 선도 프로그램 요원들은 상기에 기술된 이해상충과 상관없이 위에서 기술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대리 부모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대리 부모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대리 부모가 위에서 기술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 보호를 감독하는 (LEA 가 아닌) 판사에 의해 대리 부모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청구 그리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연관된 건강 정보 공개 및 교환에  
왜 본인의 동의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가?**

지역 교육기관 (LEA) 메디칼 청구 옵션을 통하여, 우리 LEA 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메디칼 자격이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커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메디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LEA 프로그램은 교육구 및/또는 카운티 교육국 (COEs)이 건강과 관련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비용 지불을 돕기 위해 연방 기금을 수령하기 위한 한 방법이지만 귀하가 서면 동의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정보는 IDEA 하에 귀하에게 가용한 권리 및 보호 장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통지서는 LEA 가 처음으로 귀 자녀의 메디칼 혜택에 접근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제공해야만 되며 그후 매년 제공해야만 됩니다.

귀하는 다음의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귀하는 메디칼 동의서에 관한 IEP 섹션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귀 자녀와 가족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입니다.
- 귀하의 권리는 연방 규정 300.154 타이틀 34; 1974 가족 교육권 사생활 보호법, 연방법 타이틀 20 섹션 1232 (g), 연방 규정 타이틀 34 섹션 99 하에 보호됩니다.
- 이 동의는 귀하가 이 시간 이전에 귀하의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것은 매년 IEP 모임에서 갱신합니다.

귀하의 동의는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이 취소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가 있는 뒤 그리고 취소를 하기 전에 발생한 청구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동의는 개인 신원 정보 (예: 귀 자녀에게 제공되었던 서비스 기록이나 정보), 공개 목적 (예: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청구), 귀하의 LEA 가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 (예: 메디칼)을 구체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귀하의 동의에는 LEA 가 귀하나 자녀의 공적 혜택이나 보험 사용에서

예를 들어, IDEA 하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메디칼이 지불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또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LEA 는 이러한 동의를 귀하의 서명을 IEP 메디칼 청구 섹션에 받음으로써 취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동의는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 중심 서비스에 대한 거부 또는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도록 LEA 가 캘리포니아 메디칼과의 접촉을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LEA 는 귀하에게 비용을 부과함이 없이 요구되는 모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계속 보장해야만 됩니다.

더우기, 공공기관으로서 LEA 는 적절한 무료공립교육 (FAPE)을 위해 IDEA 파트 B 아래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 지불을 위해 학부모의 공적 베니핏 또는 보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FAPE 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LEA 는:

- IDEA 파트 B 아래 자녀가 FAPE 을 받기 위해 공적 베니핏이나 보험 프로그램 (메디칼)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도록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다** (34 CFR 300.154 [d][2][i]).
- 서비스에 대한 비용청구 접수에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지불 및 메디칼을 통한 상환 청구에서 발생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LEA 는 귀하가 달리 지불할 것이 요구되는 코페이와 같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34 CFR 300.154 [d][2][ii]).
- 학생의 메디칼 베니핏 사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평생 가용한 커버리지 또는 기타 다른 보험 베네핏이 삭감되는 경우.
  - 공적 베니핏 또는 보험 프로그램 (메디칼)에 의해 달리 커버되는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 시간 동안 아동이 외부로 나갈 것이 요구되는 경우.
  -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공적 베니핏 또는 보험 프로그램 (메디칼)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 보건과 관련된 총 비용에 기초하여 가정 및 커뮤니티 중심 자격 포기의 위험이 있는 경우 (34 CFR 300.154 [d][2][iii][A-D]).

**뜻힐 셀파 안에 있는 교육구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라도 모든 불만제기를 지역 수준에서 해결하도록 귀하와 함께 노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준수 이슈에서 일하도록**

지정되었고 불만제기서 접수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귀하의 우려점 해결을 시도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촉진자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acilitator)를 만나서 대화하도록 권유드립니다. 비밀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귀하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적법절차를 접수하거나 도움을 위해 적절한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에 대해선 818-246-5378, 풋힐 셸파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특수교육부**

버뱅크 통합교육구 Dr. Paulette Koss 특수교육 디렉터	1900 W. Olive Avenue Burbank, CA, 91506	전화: 818-729-4449 팩스: 818-729-4544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Dr. Debra E. Rinder 특수교육 부교육감	223 N.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전화: 818-241-3111 x 1205 팩스: 818-548-7237
라카냐다 통합교육구 Dr. Derek Ihori 특수교육 디렉터	4490 Cornishon La Canada, CA, 91011	전화: 818-952-8397 팩스: 818-952-8394

**준수관**

Dr. Matt Hill 버뱅크 통합교육구	1900 W. Olive Avenue Burbank, CA, 91506	전화: 818-729-4400 팩스: 818-729-4550
Dr. Vivian Ekchian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223 N.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전화: 818-241-3111 팩스: 818-548-9041
Ms. Wendy K. Sinnette 라카냐다 통합교육구	4490 Cornishon Avenue La Canada, CA, 91011	전화: 818-952-8300 팩스: 818-952-8309

**기록 관리인**



Ms. Stacy Cashman 버뱅크 통합교육구	1900 W. Olive Avenue Burbank, CA, 91506	전화: 818-729-4400 팩스: 818-729-4576
Mr. Hagop Eulmessekian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223 N.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전화: 818-241-3111 팩스: 818-547-0213
Ms. Wendy K. Sinnette 라카냐다 통합교육구	4490 Cornishon Avenue La Canada, CA, 91011	전화: 818-952-8300 팩스: 818-952-8309

---

### 풋힐 셸파

Dr. Debra E. Rinder, 셸파 행정관	전화: 818-729-4449
Mrs. Suzan Dunbar, 셸파 프로그램 매니저	818-246-5278

풋힐 셸파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에서 동등한 기회를 약속한다. 셸파 프로그램 및 활동들은 장애, 성별, 성적 신분, 성적 표현, 유전적 정보, 민족, 인종 또는 민족성,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러한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특성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갖는 개인 또는 그룹과 연결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